

● 제29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보호 및 자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609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외 10명
- 나. 발 의 일 : 2020. 5. 25.
- 다. 회 부 일 : 2020. 5. 29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데이트폭력, 스토킹,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관련 범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,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 제정, 2019. 12. 25. 시행)이 제정됨.
- 이에 따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

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,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피해자’의 정의에 피해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추가하여 규정함.(안 제2조제5호)
- ‘2차 피해’에 관하여 정의함.(안 제2조제6호 신설)
- 서울특별시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·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- 2차 피해 방지와 2차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5조 신설)
-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도·점검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
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상위법인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라 그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- 전부개정안은 22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먼저,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를 규정하고,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),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~안 제10조), 여성폭력 예방교육(안 제13조), 디지털성범죄 예방(안 제14조), 2차 피해 방지(안 제15조), 여성정책 모니터링(안 제16조),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설치·지원(안 제18조~안 제21조)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<전부개정안의 조문 배열>

제1조(목적)	제16조(여성정책 모니터링)
제2조(정의)	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
제3조(시장의 책무)	제18조(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설치)
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	제19조(센터 기능)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	제20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)
제6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)	제21조(지도·점검 등)
제7조(위원회의 구성)	

제8조(회의) 제9조(간사) 제10조(위원수당) 제11조(사업비의 지원) 제12조(여성폭력 실태조사) 제13조(예방교육) 제14조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제15조(2차 피해 방지)	제22조(시행규칙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제2조(서울특별시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 과조치)
---	---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총칙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
-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용어정의(안 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안(안 제2조제5호)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2호1)에 직접 피해자와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.
- 또한 2차 피해²⁾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, 서울시차원의 여성폭

1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여성폭력 피해자"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
2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

력 대응 범위를 확대하였음.

□ 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“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”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7조³⁾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⁴⁾에 대응하

다.

3. “2차 피해”란 여성폭력 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
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

다.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
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
2) 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
3)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
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
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
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
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
8)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
9)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3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11조(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)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4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7조(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(이하 “여성폭력방지정

여 같은법 제8조5)에서 시장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, 현행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 할 것임.

- 또한 개정안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가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피드백 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.

책"이라 한다)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
2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
3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4.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
5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)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u>제12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</u> 시장은 <u>여성폭력 예방·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시행계획</u> (이하 “<u>시행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②</u> <u>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, 자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</u> ----- <u>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7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③</u> <u>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

□ **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** (안 제6조~제10조)

- 개정안은 “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”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1조6)에 따라 시장은

6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1조(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)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여성폭력방지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,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현행 조례⁷⁾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“서울특별시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”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역연대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.
- 다만,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연대가 보호와 지원대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어, 그 구성에 학교와 교육청, 경찰·검찰·법원 등 경찰·사법관련기관,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까지 아우르고 있는 바, 개정안을 통해 구성될 지방여성폭력방지원회가 현행 지역연대의 구성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임.
- 그 밖에 부칙(안 부칙제2조)으로 해당 지역연대의 경과규정을 두어, 위원회 설치·운영 상의 공백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음.

□ 2차피해 방지 (안 제15조)

- 본 개정안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8조⁸⁾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

7)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자의 2차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이를 위해 방지 지침과 관련자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2차피해의 정의(「여성폭력방지법」제3조제3호)

-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-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
-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 -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 -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-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-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 -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 -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
8)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18조(2차 피해 방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□ 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의 설치·운영 (안 제18~제21조)

- 개정안은 “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센터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“(가칭)서울 #WithU센터”로 집행부 직원, 젠더폭력 전문가, 서울시 국어 바르게쓰기 위원회 제안에 대해 지난 5월 심사를 통해 명칭을 변경한바 있음.
- 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·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,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개정안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정의규정 및 시행계획, 위원회 사항 등을 상위법인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을 반영하여 정비하고, 2차 피해 지원과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“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

센터”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, 입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

- 다만, 현행 “서울특별시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”를 “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”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성된 지역연대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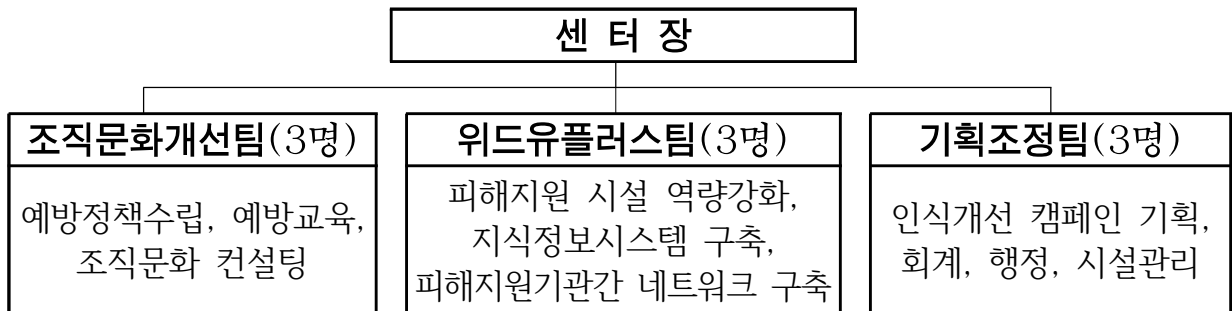
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운영계획

운영방안 : 민간위탁 운영

- 위탁기간 : 3년 ('20. 6. ~ '23. 5. 예정)
- 추진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
- 모집대상 : 최근 3년 이내 여성폭력, 노동, 성평등 관련 센터(상담소)를 관리·운영하였거나,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
- 위탁사유 : 사업을 장기적·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

조직 및 인원(안)

- 인력 구성 : 3팀 10명(센터장1, 팀장3, 팀원 6)
- 조직도



주요 기능

- 법적·현실적 사각지대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
 -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,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, 성희롱 예방교육
- 피해 지원 거버넌스 구축
 -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,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,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
-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확산